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02호 2010. 10. 26(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계획(제2010-943호) 2

◀ 고 시 ▶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남구고시 제2010-20호)..... 6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943호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10. 26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계획

1. 개정이유

각종 제·증명 및 민원접수 수수료는 수입증지료만 납부하여야 하나,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 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수입증지 대금납입시 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1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504, FAX 270-2490, E-mail : annakorea@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현금으로” 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납입하여야 한다.” 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증지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정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 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현금</u> <u>으로</u>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 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u>금고에 납입하여</u> <u>야 한다.</u></p> <p>② ~ ④ (생 략)</p>	<p>제4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u>현금 또는 신용카드·</u> <u>교통카드로</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 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 ----- ----- ----- -----<u>납입하여야 한다.</u> <u>단,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증지대금을</u> <u>납부한 때에는 정산일에 따라 변경</u> <u>될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 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고 시

포항시남구고시 제2010-20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새로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 남구청장

2010.10.28

명 칭	기준점 번호	직각좌표 계 원 점 명	직 각 좌 표		설치일자	소 재 지	표지 재질	성과보관 장 소
			X	Y				
도근점	도3670	동부원점	277222.94	231713.22	2010.09.10	연일읍 동문리 351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71	동부원점	277199.96	231785.81	2010.09.10	연일읍 동문리 351-19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72	동부원점	277151.85	231901.49	2010.09.10	연일읍 동문리 351-21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73	동부원점	277090.07	231885.30	2010.09.10	연일읍 오천리 735-4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74	동부원점	277037.68	231871.82	2010.09.10	연일읍 오천리 716-30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75	동부원점	277065.18	231783.10	2010.09.10	연일읍 오천리 712-2	철재	남구건축지적과
도근점	도3676	동부원점	277087.01	231690.27	2010.09.10	연일읍 동문리 99-1	철재	남구건축지적과